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안)

의 안	
번 호	40

제출년월일 : '91. 11.

제출자 : 안산시장

0. 주 문

안산시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안)을 심의 확정함

0. 제안이유

-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 심의
 - . 안산경찰서장으로부터 현 대학동파출소는 관할 구역의 북서방향 끝부분 한대 안산 캠퍼스앞에 위치하고 있어 이동, 본오동 지역 범죄증가로 인한 방법활동 및 신속한 사건 신고처리에 지난할뿐 아니라
 - . 안양대학 소요사태시 기습방화, 투석, 점거의 대상이 되므로 타 지역으로 이전에 따른 토지무상 사용허가 신청이 있어 내용을 검토한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89조에 의거 건물 기부 체납 조건으로 토지무상 사용허가 코자함

0. 주요골자

- 사업명 :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 위치 : 안산시 사동 372 - 21 - 2

- 부지면적 : 814m² (246평)
- 사용허가면적 : 331m² (100평)
- 건축연면적 : 279m² (84.4평)
- 용도 : 대학동 파출소 건립 부지
- 층수 ; 지하 1층, 지상 2층

4.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82조 (행정재산 및 보존재사의 관리 및 처분)
 - . 1항 :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이를 대부, 매각, 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사전을 설정할수 없다.
다만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 (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 . 법 제8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용, 수익의 허가또는 대부를 받은자는 허가 또는 대부받은 재산에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지방자치 단체의장이 그재산의 관리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한 축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기타 : 위치도 (별첨)